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2일 정성호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1.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조세소위(2024.11.15.) 상정

제2차 조세소위(2024.11.18.) 상정

제3차 조세소위(2024.11.19.) 상정

제4차 조세소위(2024.11.20.) 상정

제5차 조세소위(2024.11.21.) 상정

제6차 조세소위(2024.11.22.)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2025. 2.11.)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2.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성호의원)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 5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